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 문 자	지 광 천 위 원	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문 화 관 광 과 장)	일 자	질의	2018년 12월 3일	
			답변	2018년 12월 4일	
회 의	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	

질문요지

-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자료 제출

답변내용

-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: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 1부. 끝.

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정관

제정 2012.11.21.

개정 2014.11.1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“PyeongChang Culture & Arts Foundation”(약칭 PCAF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재단은 평창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평창군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창작 그리고 전시 교육활동 보급 우리군 전통문화계승 발굴 육성
2.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
3. 올림픽 문화클러스터, 페스티벌 참여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
4. 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및 올림픽 공원계획 참여
5. 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 상품 전략화 산업 추진
6. 문화예술의 국내.외 교류 사업
7.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.관리, 보급 및 조사.연구
8. 국가와 도 및 군에서 위탁 하는 사업 등
9.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<신설 2014.11.13.>
10.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및 육성 <신설 2014.11.13.>

제5조(수익사업)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임 원

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, 상임 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인

제7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임한다. <개정 2014.11.13.>

-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③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, 연장자인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이사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임한다. <개정 2014.11.13.>

② 당연직 이사는 설립 출연자 및 그 위임자로 한다.

<개정 2014.11.13.>

- ③ 선임직 이사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<개정 2014.11.13.>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9조(상임이사) ①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임한다. <개정 2014.11.13.>

-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임한다. < 개정 2014.11.13.>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
3.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
4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으며, 해임된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
제14조(임원의 선임제한)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관리·감독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<개정2014.11.13.>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 및 회계감사
 2. 법인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이사장에게 보고
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
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- ⑤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제3장 이사회

제16조(이사회 구성)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하며,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
제17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8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5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제19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0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- 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.
3.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.
4.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.

- ③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1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6. 수익사업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
7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2조(이사회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3조(의사록) 이사회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, 선출된 이사 2명이 기명,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조직 및 구성인원

제24조(조직)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직제규정을 제.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5조(직원의 임면 등)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(공무원 파견 요구 등) 재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27조(재산)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 이 경우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은 ‘별지1’과 같다.

‘별지1’개정 <2014.11.13.>

1. 삭제 <2014.11.13.>

2. 삭제 <2014.11.13.>

③ 운영재산은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④ 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매년 운영재산의 20퍼센트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⑤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8조(운영재원) ① 재단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은 다음 해까지 발생할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9조(재산의 관리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전거의 표기 및 기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재단이 매수·기부채납·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수입과 지출) ①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수익사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,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31조(잉여금 처리)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한다.

제3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결산서의 제출)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.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5조(임원보수의 제한)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.

제36조(회계감사)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장 사무국

제37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8조(사무국의 운영)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② 상근임.직원의 정수의 조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7장 보 칙

제39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0조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(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.

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평창군에 귀속한다.

제42조(공고) ①법인의 설립.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는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2종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.

제43조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연도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년

도 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정관 제12조와 같다.
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'별지 2'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부 칙 < 2014.11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1> <개정 2014.11.13.>

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기본재산

구 분	출 연 자	금 액	비 고
설립 출연금	김 도 영	금100,000,000원 (금일억원)	현금

<별지2>

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확정하고
설립 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.

2012. 11. 6

재단법인 평창군문화예술재단 발기인 명부

발기인	평창군수	이 석 래 (인)
발기인	평창군 의회의원	장 문 혁 (인)
발기인	평창군문화원장	고 창 식 (인)
발기인	(주)강원창대표	김 도 영 (인)
발기인	영월평창정선축협장	김 영 교 (인)
발기인	평창화우회장	이 득 헌 (인)
발기인	월정사부주지 원행스님	이 성 휘 (인)
발기인	평창농협군지부장	이 재 욱 (인)
발기인	허브나라대표	이 호 순 (인)
발기인	문화관광과장	유 동 근 (인)
발기인	평창 전평창군의회의원	김 진 석 (인)
발기인	감자꽃스튜디오대표	이 선 철 (인)